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Q&A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질의응답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A1

-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24.5.20. 시행)임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Q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이유는?**

A2

-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 타인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
-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 최근 5년간 부정사용 현황(외국인 포함)>

'23.12.31.기준(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적발인원	3,217	878	563	536	586	654
결정건수	176,474	41,247	31,433	32,605	30,771	40,418
결정금액	4,066	1,178	738	670	628	852

주) 결정년도 기준, 결정건수: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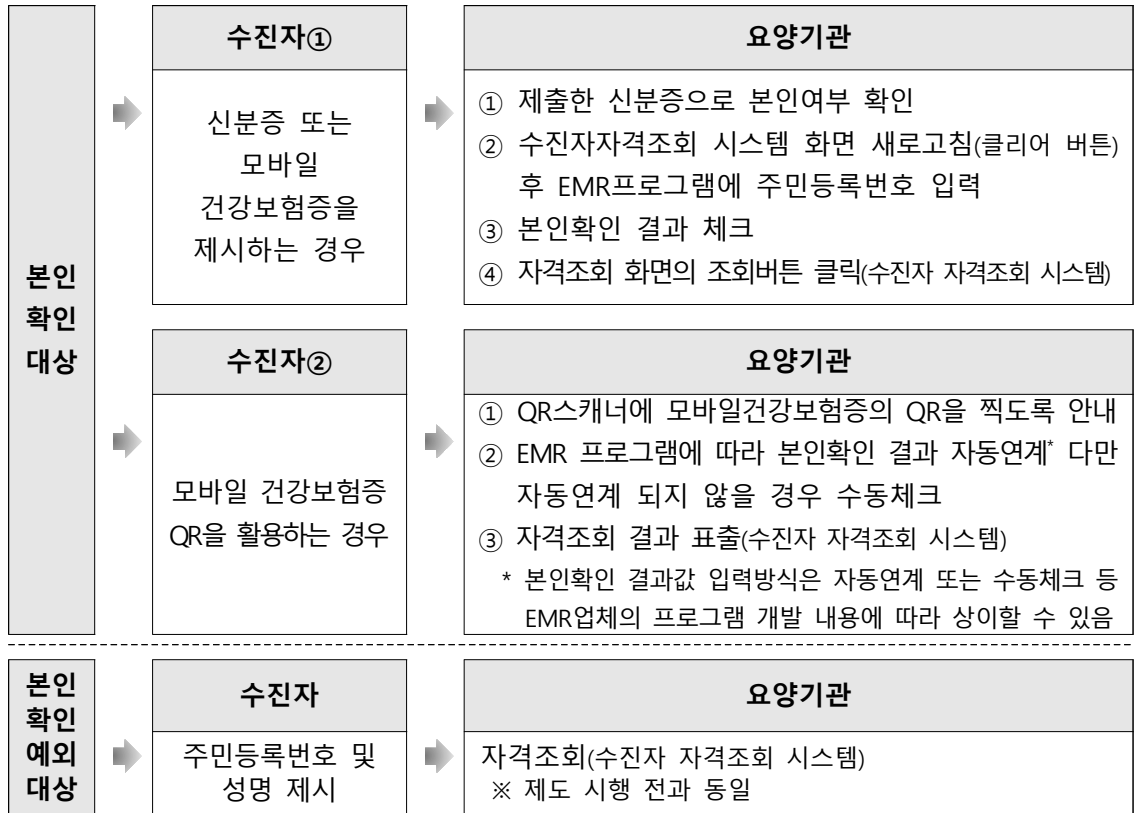
-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뎴' 1만7천여정 처방받아"('18.12.10., 파이낸셜뉴스)
-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50대 여성 검거"('21.12.21., KBS)
- "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24.3.23., new1)
-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 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24.1.11., 의협신문)

Q3

수진자 내원 시 본인확인 절차는?

A3

-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
  - 본인확인: 증명서에 부착된 사진을 통해 본인확인
  - 자격확인: 공단의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Q4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는?

A4

-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 (서비스앱)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삼성월렛 등
- ※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촬영된 신분증) 인정 불가

**Q5**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 신여권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지?

A5 ○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됨)으로 인정 가능하며,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가능

**Q6** 촬영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A6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영상, 사진촬영 등에 의한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불가

**Q7**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A7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료·회송환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Q8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전산에 표출되는지?**

A8

-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하단) 화면에서 확인 가능함
  -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②장기요양 등급자(등급 무관), ③임산부(공단 임신·출산 바우처 등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대상 항목에 "Y" 표출(해당 조건 미충족 시 "N" 표출)
  - ※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 개인정보로서 예외 사유는 표출하지 않음
- 요양기관 EMR프로그램 개발관련 안내사항 확인 경로
  -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표출 안내'
  - (개발자) OCS개발자지원사이트>공지사항>「제도시행(본인확인예외\_본인 부담차등)항목 추가 안내(M2레이아웃 변경)」

**Q9      본인확인 예외사항 중 6개월 이내 재진환자의 기준은?**

A9

- 본인확인 예외대상 재진환자는 '24.5.20.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임
  - ※ 환자의 상병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과 상이함
- 사례1) '24.5.20. 이전,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지라도 '24.5.20. 이후 본인확인 대상임, 6개월 마다 본인확인 실시
  - ① '24.5.17.진료 → '24.5.20.내원 시 본인확인 필요
  - ② '24.5.20. 본인확인 후 진료 → '24.11.20. 진료받을 경우, 본인확인 필요.
- 6개월 계산식: 본인확인 월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본인확인 일에 -1일**
  - ※ 진료당일(초일) 포함,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 본인확인 일자(31일 등)가 존재하지 않는 월의 경우 말일로 계산하여 다음달 1일부터 본인확인
  - 예1) 5월20일 진료 → 11월19일까지 유효, 20일부터 본인확인
  - 예2) 8월31일 진료 → 2월 28일까지 유효, 3/1부터 본인확인
  - 예3) 10월31일 진료 → 4월 30일까지 유효, 5/1부터 본인확인
- 사례2) '24.5.20.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됨
  - 퇴원 후 6개월 경과와 관계없이 재내원 할 경우 본인확인 대상임.
  - 단, '24.5.20. 이후 (본인확인 후) 입원할 경우 퇴원일 이후 6개월간 본인확인 예외 대상임

**Q10** 진료의뢰·회송서에 의한 환자의 경우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A10

- 진료의뢰·회송을 의뢰한 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 환자의 진료 의뢰·회송서 받은 병·의원의 경우, **진료의뢰·회송서를 통해 진료하는 최초 1회 진료는 본인확인 예외대상임**
  - ※ 단, 진료의뢰서에 **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예외 대상
- 진료·회송 진료건 이후에 해당 병·의원에 다시 내원할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됨.

**Q11**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A11

-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즉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본인확인 대상임**

**Q12** 대리처방의 경우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A12

- 대리처방의 경우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됨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아 약제를 대신 처방받은 제도로,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이 필요함
  -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현행 대리처방 요건에 맞게 실시함

Q13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13

○ (비대면 진료 시 본인확인 방법)

- ① (화상진료)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 ② (전화통화 진료)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③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금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

-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비대면진료 관련,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본인 확인 방법 안내' 글 참고

Q14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14

○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부당이득금) 증 대여·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단순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수진자의 증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과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경우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 과태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고, 부당이득금은 지출되지 않아할 금액의 환수로 법적 성격이 상이함

Q15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하여 진료 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은?
A15	<p>○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p> <p>※ 증대여·도용 시 수진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p>
Q16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A16	<p>○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후 활용 안내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p> <p>○ 전액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지참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약국 포함)</p>
Q17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A17	<p>○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일반 수가(비급여)를 적용한 진료 안내</p> <p>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거부할 경우 일반 수가를 적용하여 진료 가능</p>

**Q18**      **요양기관 본인확인 결과 관리 방법은?**

A18

- 본인확인 결과는 ① 전산 활용(요양기관 정보마당 및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② 수기 기록 등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관리** 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활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자격확인시스템의 '본인확인완료 에 체크하여 관리
  - 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수진자자격확인-'본인확인완료

-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요양기관 EMR화면에 '본인확인완료  체크박스를 추가 개발하고, 본인확인 체크 후 자격조회를 하면 결과가 연계됨
  - ※ (프로그램 개발 등 안내 게시) 요양기관 정보마당>공지사항('24.4.4.자)
- (수기 기록) 진료기록부에 본인확인 여부를 기록

**Q19**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용 지문판독기 사용(배부) 계획이 있는지?**

A19

- 지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Q20**      **외래에 붙여 놓을 수 있는 홍보물 제작·배부 요청**

A20

- '본인확인 강화 제도'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종이삼각대)이 5월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병·의원(약국, 보건소 제외)에 배부되었음
  - 추가 배부 계획은 없으며, 필요 시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자료 배포(Q&A 수정본 첨부)에서 홍보물 파일 다운로드 받아 사용(주의: 해당 디자인 자체 변경 및 가공 불가, 변경사용 시 저작권 문제 발생)



Q21	<p>키오스크를 활용하여 환자 등록 및 수납 등의 업무처리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p>
A21	<p>○ 요양기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 키오스크의 바코드 및 QR을 활용한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은 어려우나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를 공단이 제공하고 있음(요양기관 정보마당)</li> </ul>
Q22	<p>본인확인과 관련하여 환자와 마찰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직통 전화 개설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p>
A22	<p>○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응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문제 등으로 직통 전화 개설의 어려우나 고객센터 상담원 1차 상담 후 제도 세부사항에 대한 2차 상담은 지사 담당자를 통해 추진</li> </ul>
Q23	<p>건강검진, 의료급여 대상자도 본인확인 대상인지?</p>
A23	<p>○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본 제도로 인한 본인확인 대상은 아님</p> <p>※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산 상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표출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으므로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함.</li> </ul>
Q24	<p>시설 수용자는 어떻게 본인확인 해야 하는지?</p>
A24	<p>○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함.</p>

Q25	<b>방문간호, 가정간호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b>
A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본인확인 예외대상이 되나, 가정간호는 본인확인 대상이며 유선 확인 및 신분증 사본을 통한 본인확인은 불가함</li> <li>-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고,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li> </ul>
Q26	<b>동일 요양기관의 다른 과를 내원하는 경우에 다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b>
A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 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양기관에 6개월 이내 다시 내원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이 됨.</li> </ul>
Q27	<b>모든 약국은 본인확인에서 제외 되는지?</b>
A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이 되며,</li> <li>○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여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을 실시해야함.</li> </ul>
Q28	<b>응급환자가 입원했을 때 본인확인 대상이 되는지?</b>
A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환자는 진료의 연속성을 따져 응급처치 후 입원 시 본인확인 예외대상이 되나, 퇴원 이후 입원과 동일 상병에 따른 외래진료라 할지라도 본인확인 대상이 됨.</li> </ul>

**Q29** 진료 접수 당시 본인확인을 하였으나, 해당 진료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비급여 진료 등)에도 이를 본인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6개월 예외기간을 둘 수 있는지?

**A29** ○ 본인확인 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Q30** 고시 제2조에 「전자서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A30** ○ 접수, 수납 등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자체 홈페이지,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진행하는 병·의원을 고려하여 전자적으로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적장치임.  
 - 예) 병원홈페이지에 전자인증서, 본인명의를 핸드폰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로그인 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것을 본인확인 한 것으로 간주

○ 전자서명: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되어있는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로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만 인증 가능하며, 해당 인증서를 육안으로 제시하는 것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본인확인 결과값: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결과 정보로 본인확인 기관은 본인확인 지원 포털에서 확인 가능

- (아이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휴대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신용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 (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토스, 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 예) 본인명의를 핸드폰 번호 입력 시 해당 통신사에서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 카드 정보 입력 후 해당 카드사에서 홈페이지·ARS·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

※ 단순히 요양기관에 본인명의를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거나,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맞다는 결과 정보 수신 시 본인확인 한 것으로 인정됨.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관련 질의응답

Q1	<b>‘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란?</b>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증임</li> <li>- 모바일건강보험증 ⊕ 모바일자격본인확인QR인증으로 구성</li> </ul>
Q2	<b>‘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b>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li> <li>- (아이폰)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li> </ul> </li> <li>○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실행 → 본인확인(휴대폰인증) → 로그인 방법 설정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패턴, 지문, 얼굴)]</li> <li>* (생체인증)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먼저 등록한 후 사용가능</li> </ul>
Q3	<b>‘모바일 건강보험증’ 개발 배경은?</b>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대비, 모바일 인증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한 본인 및 자격확인 수단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도모</li> </ul>
Q4	<b>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규 앱을 이용할 수 있는지?</b>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가 이용 가능</li> </ul>
Q5	<b>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핸드폰 문자인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카로나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는 사용 할 수 있는지?</b>
A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불가</li> </ul>

Q6	<b>‘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 간편 로그인 수단이 있는지?</b>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턴, 지문, 얼굴 인식을 통한 생체인증 및 비밀번호 활용 수단이 있음</li> <li>※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등록 후 사용 가능</li> </ul>
Q7	<b>요양기관에 방문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b>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본인확인 후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됨</li> <li>- 30초를 초과할 경우 화면터치를 통해 재생성 가능</li> </ul>
Q8	<b>키오스크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b>
A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범용스캐너 및 키오스크에서 스캔이 가능함</li> <li>※ 스캐너 또는 키오스크와 단말기 간 연계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필요</li> <li>- 키오스크의 바코드 활용을 위해 시스템 개선 중</li> </ul>
Q9	<b>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는</b>
A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범용스캐너 및 키오스크에서 스캔 가능</li> <li>※ 스캐너 또는 키오스크와 단말기 간 연계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필요</li> </ul>
Q10	<b>모바일 건강보험증(QR코드 포함) 발급 및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는지?</b>
A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비용은 무료(공단 부담)로 제공되고 있음</li> </ul>
Q11	<b>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b>
A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은 접수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함</li> <li>※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하여 제출(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안됨)</li> </ul>

Q12	<b>시범사업 요양기관에 배부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스캐너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b>
A12	<p>○ 배부된 QR 스캐너는 배송일자로부터 1년간 무상 보증기간이며, 이 후에는 요양기관에서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함</p> <p>※ 무상 보증기간에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유상 AS를 받아야 함</p>
Q13	<b>앱 다운로드 시 인증서 오류는 어디에 문의하여야 하나요?</b>
A13	<p>○ 인증서는 한국모바일인증(KMC)에서 서비스하고 있어 한국모바일인증(KMC) 고객센터(02-2033-8500)로 문의가능</p> <p>※ 해당 업체는 2024년12월31일 까지 공단과 인증서 발급에 대해 계약됨</p>
Q14	<b>가입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상세정보 보기)으로 표출되는 피부양자도 본인확인이 가능한가요 ?</b>
A14	<p>○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한 본인확인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당사자에 한해 본인확인 가능</p> <p>- 모바일 건강보험증상 사진표출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 진행 중</p>

## 참고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령 제 0101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증명서 또는 서류”를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참고 2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9호, 2024.7.22.일부개정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 정보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